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8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지정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Ⅲ. 검토의견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 ----- ----- ----- ----- -----4년-----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¹⁾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일정한 기간²⁾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게 됨.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2년의 범위 내 지정, 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법 §4①, §10①)
○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 최대 1년 6개월(최초 6개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 §10의2⑦)

-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말 기준 총 37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그중 197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9월말	계
지정 건수	77	58	50	52	56	82	375
출시 건수	64	42	44	24	18	5	197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및 제10조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대 4년의 지정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려는 것으로, 규제혁신 활성화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실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기간연장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후 연장된 경우가 121건 (65.4%)에 이르는 등 다수의 혁신금융사업자가 실질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시장 테스트할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음.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기간연장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9월 말
총 지정건수(A)	77	58	50	52	56	82
연장 건수(B)	49	34	38	8	0	0
B/A	63.6%	58.6%	76.0%	15.4%	-	-

주) 연장 건수(B)는 해당 연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 중 최초 유효기간(2년) 도과 후 연장으로 이어진 건임.

(자료: 금융위원회)

- 4)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6개 부처의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보면,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및 스마트도시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을 기본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경우 기본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규제샌드박스 제도별 실증특례 유효기간 현황>

제도	혁신금융 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ICT융합	산업융합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특구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 기업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법률명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실증특례 유효기간	2+2년	4+2년	2+2년	2+2년	4+2년	2+2년

주)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기본 2년 또는 4년으로, 최대 2년까지 한 차례 연장 가능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검증기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혁신 금융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 더하여, 현행 제도상으로도 실질적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최대 5년 6개월 이상으로 이를 추가로 연장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시장 테스트 기간의 장기화보다는 신속한 규제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이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되면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 지정기간 소요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초 2년의 지정기간과 2년의 지정기간 연장 후에도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한 후 정비가 완료·시행되기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임.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최대 5년 6개월 이상이라는 점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시장 테스트를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 혁신금융사업자가 기한 제약 없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지정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과 관련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한 후 정비가 완료·시행되기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려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6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 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